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의안 번호	2725
----------	------

제출년월일 : 2015. 10. 23.

제출자 : 안산시장

개정이유

-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조례가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정관의 재단 명칭 변경과 사업 변경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정관 명칭 변경
 - ▶ 에버그린21(EVERGREEN21)
⇒ “안산환경재단(ANSAN EVERGREEN FOUNDATION)”
 - ▶ 법인 ⇒ “재단”
- 정관 조례명 변경
 - ▶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
⇒ “안산시 안산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재단 사업 범위 확대 (안 제4조)

개정정관안 : 붙임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2

관계법령발췌서 : 해당없음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없음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기타 참고사항

- 안산시 환경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붙임3
-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 붙임4
- 이사회 결과보고서 : 붙임5

향후계획

- 시의회 동의 → 시장의 승인 → 경기도 허가 승인요청

【붙임1】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일부개정 동의(안)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관의 제명 중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을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으로 한다.

제1조 중 “에버그린21(EVERGREEN21)”를 “안산환경재단(ANSAN EVERGREEN FOUNDATION)” 으로 한다.

제2조 중 “법인” 을 “재단” 으로 하고, “에버그린21”를 “안산환경재단” 으로 한다.

제3조부터 제34조까지 “법인” 을 “재단” 으로 하고, 제4조 제1호 “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 를 “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 으로 하고,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를 삭제하고, 제4호 “시민에 대한 환경교육” 을 “환경 · 산림 · 에너지 등 교육에 관한 사항” 로 하며, 제7호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을 “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으로 하고, 제8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에너지효율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제9호 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호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

제11호 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경기도지사의 허가를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붙임2】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재단법인 에버그린21	재단법인 안산환경재단
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EVERGREEN21)이라 한다.	제1조 【명칭】 <u>안산</u> 환경재단(ANSAN EVERGREEN FOUNDATION).....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안산시 에버그린21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사회·환경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환경 개선 및 보전사업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 .. 재단..... <u>안산환경재단</u>
제3조 【사업】 이 법인의 사무소는 안산시 (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사업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3조 【사업】 .. <u>재단</u>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u>안산에버그린 환경인증제</u> 2. <u>청정에너지 보급확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지원사업</u> 3. <u>생태공원 등 환경관련시설 수탁운영</u> 4. <u>시민에 대한 환경교육</u> 5. <u>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u> 6. <u>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사업</u> 7. <u>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u> 8. <u>(신설)</u> 9. <u>(신설)</u> 10. <u>(신설)</u> 11. <u>(신설)</u>	제4조 【사업】 .. <u>재단</u> 1. <u>환경인증제 시행에 관한 사항</u> 2. <u>(삭제)</u> 3. <u>(삭제)</u> 4. <u>환경·산림·에너지등 교육에 관한 사항</u> 5. <u>(삭제)</u> 6. <u>(삭제)</u> 7. <u>환경개선 및 보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u> 8. <u>에너지효율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u> 9. <u>환경생태투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10. <u>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항</u> 11. <u>민간단체 환경보전사업 지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u>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 【수익사업】 ① 이 <u>법인의</u>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안에서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수익사업을 할 경우에는 <u>법인은</u>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u>법인의</u> 목적 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일체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수익사업】 ① …재단…………… ……………… ……………… ……………… ②…………… 재단 …………… ……………… ③…………… 재단 … ……………… ……………… ……………….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u>법인에</u> 두는 임원 및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제6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 재단 … ……………… 1 ~ 4 (현행과 같음)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법인의</u> 임원이 될 수 없다. 1 ~ 4 (생략) ② (생략)	제8조 【임원의 결격사유】 ①…………… … 재단 …………… 1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 【임원의 해임】 (생략) 1. <u>법인의</u>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생략) 3. <u>법인의</u>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u>법인의</u> 명예나 위신을 손상하거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 5. (생략)	제10조 【임원의 해임】 (현행과 같음) 1. 재단 …………… 2. (현행과 같음) 3. 재단 …………… 4. 재단 …………… ……………… 5. (현행과 같음)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 【임원의 직무】</p> <p>① (생략)</p> <p>② 이사장은 <u>법인</u>을 대표한다.</p> <p>③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u>법인</u>의 업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관리·감독한다.</p> <p>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u>법인</u>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p> <p>⑤ ~ ⑥ (생략)</p> <p>1. <u>법인</u>의 재산상황 및 결산을 감사하는 일</p> <p>2. <u>법인</u>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p> <p>3 ~ 6 (생략)</p> <p>⑦ (생략)</p>	<p>제11조 【임원의 직무】</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재단</u>.....</p> <p>③ <u>재단</u>.....</p> <p>④ <u>재단</u>.....</p> <p>.....</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1. <u>재단</u>.....</p> <p>2. <u>재단</u>.....</p> <p>.....</p> <p>3 ~ 6 (생략)</p> <p>⑦ (현행과 같음)</p>
<p>제12조 【직원의 임면】</p> <p>① <u>법인</u>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p> <p>② (생략)</p>	<p>제12조 【직원의 임면】</p> <p>① <u>재단</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조 【임·직원의 복무】 <u>법인</u>의 임직원은 별도 규정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p>	<p>제13조 【임·직원의 복무】 <u>재단</u>.....</p> <p>.....</p>
<p>제14조 【임·직원의 보수】</p> <p>① <u>법인</u>의 임·직원의 보수는 별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한다. 다만,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4조 【임·직원의 보수】</p> <p>① <u>재단</u>.....</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u>법인</u> 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u>법인</u> 을 대표하지 못한다.	제15조 【임원의 대표권 제한】 <u>재단</u> <u>재단</u>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① <u>법인</u>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 ④ (생략)	제16조 【이사회의 구성】 ① <u>재단</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① (생략) 1. <u>법인</u> 운영 기본방침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 3 (생략) 4. <u>법인</u> 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 8 (생략) ② <u>법인</u> 의 재원확보 기타 필요한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에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7조 【이사회 의결사항】 ① (현행과 같음) 1. <u>재단</u> 2 ~ 3 (현행과 같음) 4. <u>재단</u> 5 ~ 8 (현행과 같음) ② <u>재단</u>
제23조 【조직】 ① <u>법인</u> 의 조직은 이사장이 정하는 별도 규정에 의한다. ② (생략)	제23조 【조직】 ① <u>재단</u>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 【재산의 구분】 ① <u>법인</u> 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 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u>법인설립</u> 시에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과 평가액은 불임과 같다. ③ (생략)	제24조 【재산의 구분】 ① <u>재단</u> ② <u>재단</u> ③ (현행과 같음)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정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 【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u>법인인</u> 의 청산을 종결한 때에는 그 취지를 등기한 후 경기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청산종결의 신고】재단.....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u>법인</u> 해산시 그 잔여재산은 안산시에 귀속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
제34조 【고시 및 공고】 <u>법인이</u> 고시 및 공고할 사항은 시의 시보 또는 신문 등에 게재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게시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34조 【고시 및 공고】 재단